

[의사일정 제 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동해시장

1. 제안이유

2026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 총 1건

- 취득(1건), 처분(0건)

< 취득 재산 >

○ 건물 : 해당없음

○ 토지 : 5필지 / 총 면적 25,002㎡

3.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재산

(단위 : m², 백만원)

사 업 명 (주요 안건)	방법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담당 부서
			수량	면적(m ²)	기준가격	
합 계	취득	토지	5	25,002	107	
		건물	-	-	-	
		기타	-	-	-	
	처분	토지	-	-	-	
		건물	-	-	-	
		기타	-	-	-	
대진동 일대 토지 매입	취득	토지	5	25,002	107	도시과
		건물	-	-	-	
		기타	-	-	-	

1. 대상 재산현황

○ 취득 재산

구분	위치	규모	비고
토지	대진동 산32-6 외 4필지	25,002㎡	총 5필지

2. 재산의 취득사유 및 용도

○ 취득사유

- 대상지는 대진동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배수로 편입토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추가 매수를 요청함에 따라 매입을 추진

○ 용도

- 민간의 무분별한 토지이용 차단 및 향후 지역 발전 구상 도모

3. 사업개요

○ 위 치 : 동해시 대진동 산32-6번지 일원

○ 규 모 : 25,002㎡(총 5필지)

(단위 : ㎡, 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취득면적 (㎡)	공시지가	기준가격 (공시지가*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총 5필지			25,002	25,002		107,046,090
1	대진동	산32-6	임야	7,160	7,160	4,370	31,289,200
2	대진동	산32-17	임야	2,005	2,005	4,330	8,681,650
3	대진동	산32-7	임야	4,098	4,098	3,960	16,228,000
4	대진동	산32-8	임야	8,579	8,579	3,960	33,972,840
5	대진동	산32-9	임야	3,160	3,160	5,340	16,874,400

○ 사업기간 : 2026. 8. ~ 2027. 12.

○ 기준가격 : 약 107백만원

- 약식감정평가액 : 약 705백만원

4. 계약방법

- 협의 후 취득

5. 진행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026. 4.) 도시계획시설 배수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요청
- (2026. 5.) 토지소유자 잔여지 매수요청
- (2026. 6.) 토지 매입계획 수립
- (2026. 8.~) 토지소유자와 협의 추진

6. 기대효과

- 민간의 무분별한 토지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 발전 구상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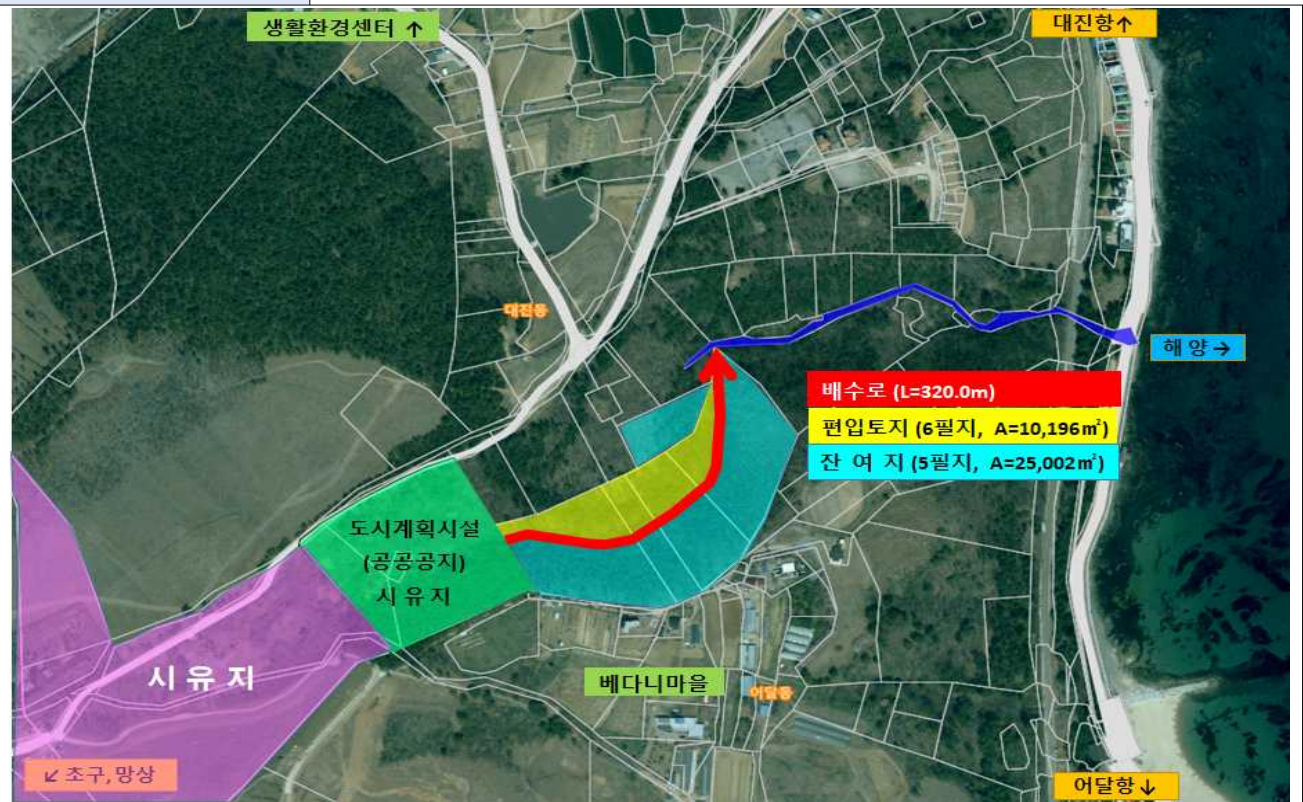
7. 참고자료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참고자료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현황사진



소관 부서		도시과
입 안 자	직위 성명	도시과장 김봉학
	직위 성명(전화)	도시개발팀장 안미정(2615)

4. 관련법령

법령	조문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 회계년도 시작 40일전까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총괄 부서		회계과
입 안 자	직위 성명	공 석
	직위 성명(전화)	공유재산팀장 정경순(2430)